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21. 3. 1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박재형 의원 등 10명(조복희, 이신자, 박종길, 안영란, 이성순, 배용식, 원종진, 배지훈, 김태형)
- 발의일자: 2021. 2. 22.
- 회부일자: 2021. 2. 25.
- 상정 및 의결: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3. 10.)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달서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달서구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공공시설의 이용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제1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협의회)제1항 및 제2항,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1. 2. 23. ~ 2021. 3. 5.)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설립되어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 보조금의 지원범위, 공공시설의 이용, 포상 등을 규정하여 협의회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운영·사무처리, 경비 등 지원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조례제정을 계기로 달서구협의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존에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힘써주기 바람. 특히, 주민과의 교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기 바람.

- 보조금이 지원됨으로써 기존 자체 회비로 운영되던 부분들이 취약해지거나, 협의회의 자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협조해 주시고 단순히 보조금 지원 금액 과소보다는 실효성 높은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행사에 제약이 많아지고, 많은 단체의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임. 이번 조례를 계기로 다시 활발하게 평화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7. 심사결과: 원안가결